

# 폐기물관리법 이해 -사례 연구-

2015. 9. 19.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 1. 폐기물관리법의 기본설계구조 (열쇠 조문)

- <사례 1>: 아들이 죽은 병아리를 화단에 묻었다. 누군가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가?
- 검토 사항: ①죽은 병아리가 폐기물인지(**폐기물 개념 및 분류**), ②폐기물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③누가 처리해야 하는지?(**폐기물 처리책임자**)④잘못 처리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폐기물 부적정(불법) 처리 조치**)
- 폐기물관리법의 목적: 폐기물의 적정(=친환경적) 처리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Id=001771&lsThdCmpCls=LO&joNo=001300000>

# 1. 폐기물관리법의 기본설계구조 (열쇠 조문)

- <관련 사례> 웅포면 한 야산에 닭 부산물이 대량 불법 매립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웅포면 고창리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25톤 대형 트럭을 이용해 마을 근처 야산에 닭 부산물을 대량 매립했다. 이날 하루 동안 주민들이 목격한 트럭만 40대를 넘었다. 퇴비화를 거치지 않은 계분과 닭 내장, 부리, 발 등을 임야에 그대로 묻어 악취는 물론, 토양·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주민 A씨는 “더운 날씨에 부패가 진행돼 쉼 새 없이 매탄 가스가 뿜어져 나왔다”면서 “전날 밤 내린 비로 침출수는 고스란히 주변 임야로 흘러들었다”고 하소연했다.
- 질문: 위 폐사한 닭과 부산물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2.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책임

- <사례 2> 건설공사 중 과거에 매립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해야 할 경우, 이를 건설폐기물로 보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매립 내지 불법투기자가 불명확한 경우 처리책임자는 지자체-발주자-시공회사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
- <질문> ①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②누구에게 처리책임이 있는지? ③(공기를 지키기 위하여) 시공회사가 일단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한 경우 이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2.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책임

- <관련 사례> 영덕군, 하천정비 폐기물 불법매립 '알고도 모른 척' 2015.04.29 08:06 입력

경북 영덕군이 축산면 도곡리(축산천 도곡제) 하천정비 일부 공사 구간에 상당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축산천 도곡제 하천정비 터파기 작업 과정에서 수백톤의 불법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와 관련 군 환경위생과 환경지도 담당은 "이번 발생한 폐기물은 오래 전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보여지며 행위자를 찾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외관상 보이는 것과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폐기물만 처리 하겠다는 사업발주부서 영덕군 하천담당의 답변은 그 이상의 폐기물은 상황에 따라 처리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군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영덕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폐기물을 방 치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문제의 현장은 나무뿌리 등 임목폐기물이 섞인 폐토사, 건축 폐기물 등이 형식적인 덮개시 설만 갖추 채 흉물스럽게 보관 중이다. 또 폐기물 임시야적장에는 폐기물 발생일과 발생량, 성상 등을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임시야적장이라는 표지만 세워져 있을 뿐 그 어떤 기재 사항도 없다. 더욱이 폐기물을 1일 이상 임시야적 할 경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 경오염 방지를 위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가변배수로를 조성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지켜 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3. 불법매립된 폐기물 처리책임

- <사례 3> 안산시 00 토지 일대는 원래는 해면이었다. A는 그 일대에 간척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한 다음 매립공사를 시행. 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토사로 매립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인 B와 공모하여 토사와 함께 산업폐기물 등을 C사로부터 받아 매립(산업폐기물 등을 지정된 매립지에 정상 매립할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은 15t 트럭 1대 당 120여 만 원 약 4분의 1 비용으로 처리). 이후 D사에 매립토지를 매각. D사 토지개발 시행 중 불법매립 사실 발견
- <질문> ①A, B, C, D는 각각 폐기물처리책임을 지는가? ②D의 권리구제 방법?
- 참고: 이 사건 매립지의 일반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총 비용으로는 금 2,470,000,000원이, 지정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총 비용으로는 금 3,770,000,000원이, 폐기물 운반비용으로는 총 금 1,950,000,000원이, 토공 매립비용으로는 총 금 400,000,000원이, 오염토양을 현장처리하여 정화할 경우의 총 처리비용으로는 금 3,400,000,000원이, 오염토양을 위탁매립하여 처리할 경우의 총 처리비용은 금 5,600,000,000원이, 오염지하수의 총 처리비용으로는 금 4,780,000,000원이 각 소요
- 가연성 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려면 27만원 정도 들지만 땅속에 매립하게 되면 고작 2만원
- [http://www.spo.go.kr/tv/news/incase.jsp?mode=view&board\\_no=530&article\\_no=432864](http://www.spo.go.kr/tv/news/incase.jsp?mode=view&board_no=530&article_no=432864)

## 4. 폐기물 매립과 보관(적치) 구분 및 처리방법

- <사례 4> A사(채석장 운영)는 2009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최대 수십만 톤의 무기성 오니(슬러지)를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암석을 잘게 부쇄 자갈이나 모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세한 돌가루(석분)를 물로 씻어내는 공정이 필요하다. 국내 골재업계는 미세 돌가루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 '폴리아크릴아마이드(Polyacrylamide)'라는 화학약품을 사용한다. 2010년 9월 사진영상에는 검은색 슬러지가 현장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주변 흙과 슬러지를 쌓아놓은 곳이 명확하게 구분됐다. 하지만 2012년 사진영상에는 산처럼 쌓여 있던 슬러지가 모두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였다. 야적된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물이 인근 왕숙천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사 관계자는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싶어도 적당한 장소가 없다"며 "벌금을 내고서라도 폐기물을 현장에 쌓아놓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업체는 심야에 덤프트럭을 이용해 인근 밭에다 몰래 버리기도 한다고 한다. A사측은 슬러지를 토양과 일대일로 혼합할 경우 건설 현장의 성토나 복토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를 정수하는 데도 이 응고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폴리아크릴아마이드의 주요 성분인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IRAC)와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유방암협회 등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008년 11월 "슬러지로 개토(땅을 갈아엎음)할 경우 인산 부족 증상이 나타나고, 토양 pH(수소이온농도)가 상승해 작물의 생육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 <질문> ①매립인지 보관(적치)인지? ②매립이라면 A사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혹은 보관(적치)이라면? ③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물이 인근 왕숙천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 5. 폐기물 재활용 방법

- <사례 5>: 중구 영종도 소재 A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반입해 일반토사와 혼합 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였다.
-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Id=001771&lsThdCmpCls=LR&joNo=001302000>